|  |  |  |
| --- | --- | --- |
|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  교통운수부 령 2014년 제4호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이 2013년 12월 16일의 교통운수부 제13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杨传堂  2014년 1월 11일  교통운수부, 상무부는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교통부,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령 2001년 제9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조항 중의 “교통주관부서”를 모두 “교통운수주관부서”로 수정하고 “대외무역경제주관부서”를 모두 “상무주관부서”로 수정한다. 제4조, 제14조, 제18조 중의 “국무원 교통주관부서”를 “성급 교통주관부서”로 수정하고, 제4조 중의 “국무원 대외무역경제주관부서”를 “성급 상무주관부서”로 수정하며, 제18조 중의 “대외무역경제부서 또는 그 수권부서”를 “상무주관부서”로 수정한다.  2.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국무원 교통주관부서"를 “성급 교통운수주관부서”로 수정한다.  3. 제11조를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45일 내에 서면으로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 또는 변경해 주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돌려주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로 수정한다.  4. 제17조를 “경영기간 연장신청을 제출하는 외국인투자 도로운수기업은 경영기간 만료 6개월전에 기업소재지 성급 교통운수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기업의 경영자격(품질신용) 심사기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성급 교통운수주관부서는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협의하여 답변한다.”로 수정한다.  5. 제19조 뒤에 한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20조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급 교통운수주관부서는 매년 3월 31일 전에 본 성의 직전년도 외국인투자 비준상황을 교통운수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 밖에 조항의 순서에 대해 상응하게 조정 및 수정하였다.  이 결정은 20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반포한다. |  | **关于修改《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的决定**  交通运输部令2014年第4号  《关于修改〈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的决定》已于2013年12月16日经交通运输部第13次部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1月11日起施行。  部长　杨传堂  2014年1月11日  　　交通运输部、商务部决定对《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交通部、对外经济贸易合作部令2001年第9号）作如下修改：  　　一、将条文中所有“交通主管部门”统一修改为“交通运输主管部门”,所有“对外贸易经济主管部门”统一修改为“商务主管部门”，将第四条、第十四条、第十八条中“国务院交通主管部门”修改为“省级交通运输主管部门”，将第四条中“国务院对外贸易经济主管部门”修改为“省级商务主管部门”，将第十八条中“对外贸易经济部门或其授权部门”修改为“商务主管部门”。  　　二、删除第九条第（二）项，将第（三）项修改为第（二）项，将“国务院交通主管部门”修改为“省级交通运输主管部门”。  　　三、将第十一条修改为“省级商务主管部门收到申请材料后，在45日内作出是否批准的书面决定。符合规定的，颁发或者变更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不符合规定的，退回申请，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四、将第十七条修改为“申请延长经营期限的外商投资道路运输企业，应当在经营期满6个月前向企业所在地的省级交通运输主管部门提出申请，并上报企业经营资质（质量信誉）考核记录等有关材料，由省级交通运输主管部门商商务主管部门后批复。”  　　五、在第十九条后增加一条作为第二十条：“省级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于每年3月31日前将本省上年度外商投资审批情况报交通运输部。”  　　此外，对条文的顺序作相应的调整和修改。  　　本决定自2014年1月11日起施行。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根据本决定作相应的修改，重新发布。 |